

## 우리나라의 관세정책과 식품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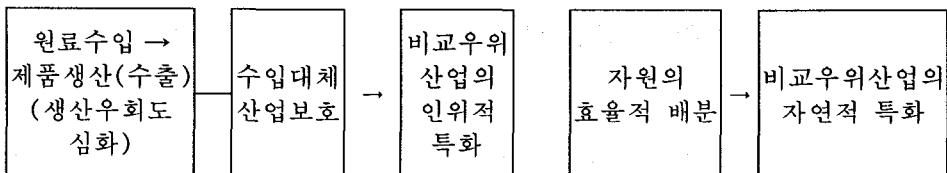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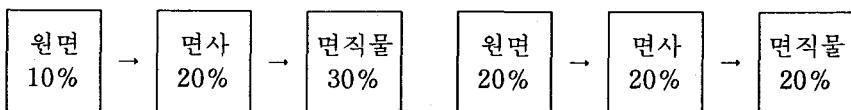
박 상 태 / 관세청 국장

### 1. 기본관세율 정책 기조

#### 가. 일반현황

- (1) 관세율체계의 2가지 일반적 형태
- 산업간 차등관세율 체계(Tariff Escalation System)  
: 정부가 특정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육성시키고자 하는

- 경우에 채택
- 산업간 균등 관세율 체계(Uniform Tariff System)  
: 관세를 통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을 배제하여 비교우위산업의 자연적특화를 위해 채택



\*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관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구 분	산업간 차등관세율체계 (Tariff Escalation System)	산업간 균등관세율체계 (Uniform Tariff System)
개념	원료품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로 하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고세율로 하여 최종제품의 관세율을 더욱 높게 하는 관세의 경사구조  (예시)	장기적으로 무세를 지향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관세구조  (예시)
목적	원재료의 저가격 수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여 가공제조업이 가급적 자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비교우위산업의 인위적 특화 달성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상 차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세의 대 산업중립성을 보장하여 주고, 관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교우위산업의 자연적 특화 달성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태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li> <li>- 과도한 차등관세제도는 제품 수입 대체를 촉진시키나 반면 완제품과 중간재간의 지나친 세율격차는 중간재의 대외의존 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경제효률이 낮고 국제경쟁력은 미약하나 장래 비교우위가 있는 유치산업 및 중소기업이 도산될 우려가 있음.</li> <li>-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시행될 때 수입 Rush가 우려되고 따라서 국제수지도 악화될 가능성 상존</li> <li>- 자원빈곤국의 경우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인상요인</li> </ul>

## (2)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체계

-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등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간 차등관세율체제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산업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83년과 1988년에 각각 제1차 (1984~88), 2차(1989~93) 관세율 인하예시제를 시행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면서 산업간 균등 관세율체제를 도입한 이래 동 기조 계속 유지<표 1 참조>
-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율체제는 산업중립적인 균등관세율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물품의 가공도별로 약간의 세율 격차를 두어 기초원자재는 1~3%, 1차가공품 5%, 중간재 및 완제품은 8%(중심관세율)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의존품은 5%이하로, 국내농산물과 동 물품과 대체관계가 있는 품목은 30~50%로 과세중

- 중심관세율을 8%로 설정한 것은 제2차 관세율인하 예시제도 입안 당시 분석결과 국내산업의 경쟁력지표인 국내외가격차가 1987년은 13.0%로서 93년에는 8.0%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는 바, 동 국내외가격차를 관세를 통하여 조정하여 주면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본데 기인한 것이며 현재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평균실행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 98년 3월 기준 3.1%)이 법정 평균관세율(7.9%)보다 낮은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가 무역구조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원자재와 중간재에 수입이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밖에도 관세관면제도와 같은 할당관세제도의 운영으로 관세부담이 그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임<표 2 참조>.

표 1. 우리나라 관세율 정책의 변천개요

	1945	1950	1957	1958	1961		1963	1967	1968
					1차	2차			
조정방법	신규 재정	무세품에 대해 임시 관세부과	전면 개정	전면 개정	전면 개정	품목분류 체계개편	전면 개정	전면 개정	소폭 개정
세변수	756개	—	726개	726개	722개	1,097개	1,097개	1,097개	1,097개
세목수	1,706개	—	1,299개	726개	722개	1,311개	1,982개	3,174개	3,019개
평균세율 변동	20.6%	—	30.3%	35.1%	47.7%	39.4%	38.9%	38.8%	38.7%
특정	0~100% 간 세율 책정	6.25동란 이후 재정 수요에 부응 (관세 임시 증정법 제정)	보호 관세 강화	보호 관세 강화	보호 관세 강화	BTN 방식 도입	수출 촉진 도모	탄 관 제 도	수모 및 모직물 관세율 개선, 금지 관세율 인하

	1973	1976	1978	1981	1983
조정방법	← 전면조정 →			부분적·점진적 조정	전면조정
세변수	1,097개	1,097개	1,010개	1,010개	1,241개
세목수	3,985개	2,521개	2,209개	2,280개	2,604개
평균세율 변동	31.3%	35.7%	24.9%	23.7%	22.5%
특정	Tariff Escalation 체계 잠정세율 제도 도입	20% 균일세율 체계, 잠정세율 확대 예시제 도입	잠정세율의 기본 세율화	Tariff Escalation 체계 고세율의 일률 인하방식 도입	Uniform Rate 체계, 20% 중심 세율로 수렴 (30-30-25-25- 20%의 5개년 예시제)

	1988	1990	1995	1996	1997
조정방법	전면조정	전면조정	소폭조정 (2개품목)	소폭조정 (3개품목)	부분조정 (257세목)
세변수	1,241개	1,241개	1,241개	1,241개	1,241개
세목수	2,709개	2,718개	2,718개	2,871개	2,961개
평균세율 변동	18.1%	11.4%	7.9%	7.9%	7.9%
특정	8% 중심세율로 수렴 (15-13-11-9- 8%의 5개년 예 시제)	5개년 예시제의 1년순연(1989~ 1993년까지를 1989~1994까 로 변경)	컨테이너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세율 무세화	화물선, 어선, 기타 선박의 관세율 무세화	의류 등 257세목 관세율 조정

(자료 : 재경부)

표 2.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1983	1988	1991	1993	1995	1996	1997	1998.3
법정관세율	23.7	18.1	11.4	8.9	7.9	7.9	7.9	7.9
실행관세율	7.0	6.8	5.7	4.3	4.4	4.4	4.3	3.1

(자료 : 관세청)

주 : 법정관세율은 품목별 법정관세율을 단순평균한 수치이며 실행관세율은 입액 대비 관세징수액임.

## (3) 관세의 재정 기여율

- 제 1, 2차에 걸친 관세율인하예시  
제, 관세감면제도 및 할당관세제도  
의 운영으로 관세의 재정기여율

(관세/국세)은 1961년에 22.8%,  
1981년에 12.3%, 1991년에 11.3%  
에서 1997년에 8.3%로 계속 떨어  
지는 추세 <표 3 참조>

표 3. 국세수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1961	1973	1976	1981	1983	1988	1991	1993	1995	1996	1997
22.8	15.8	14.4	12.3	14.6	13.2	11.3	7.4	8.2	8.2	8.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그러나 관세청의 1998년 총 조세  
수입규모는 21조5,624억 원으로 총

국세수입의 약 28%를 차지<표 4  
참조>

표 4. 관세청 징수실적 및 목표

(단위 : 억 원)

구 분	'97실적	'98목표	'98년 7월 실적	진도율(%)	전년동기 대비(%)
관 세	57,976	68,024	24,041	35.3	70
내 국 세	126,446	147,600	73,952	50.1	103
합 계	183,422	215,624	97,993	45.4	92
총국세수입	699,280	763,987	—	—	—
관세청징수(%)	26.2	28.2	—	—	—

## 나. 기본관세율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 (1) 균등관세율제도에 대한 평가

- 균등관세율제도의 기본취지는 관세를 산업간·품목간에 균등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율을 균등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러나 실효보호율의 입장에서 보면 균등관세율제도가 차등관세율 제도보다 우월한 제도로 간주될 수 있으나 균등관세율제도에 대한 현실적 비판은 만만치 않은 바, 이러한 비판은 주로 균등관세제도가 추구하는 실효보호율의 균등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임.
    - 그 이유는 첫째로 원료·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품목간에 균일하지 않으며 각 산업의 수입원료 및 수입중간재의 투입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완제품에 균등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보호율은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둘째 환율이나 내국세제상의 보호 등 모든 보호구조가 동일하지 않는 한 각 산업에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실효보호율이 균등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균등관세율제도가 반드시 차등관세율 제도보다 효율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균등관세율 제도를 택할 것인가, 차등관세율 제도를 택할 것인가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라 하겠음.
- ### (2) 중심관세율의 적정성여부 평가
- 1988년에 마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율 구조는 1987년 한국 산업은행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근거로 한 것임. 동 분석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교역재의 내외가격차는 평균 13%였음. 이는 5년 전인 1983년이 22%에서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2차 관세인하예시제가 끝나는 시점인 1993년 교역재의 내외가격차는 평균 8%가 될 것으로 전망. 이 전망을 근거로 하여 1993년의 중심세율이 8%로 책정되었으나, 1990년 방위세 폐지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의 시행을 1년씩 순연함으로써 1994년 이후의 중심세율이 8%가 되었음<표 5 참조>.
  - 산업은행이 내외가격차를 조사한 1991년이후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어 가다가 1995년에 더욱 악화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의 교역재 내외가격차 평균은 1991년의 그것보다 오히려 높을 가능성 큼.
  - 그러나 1998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IMF시대의 도래로 인한 환율변동에 따라서 내외가격차는 줄어들어 현행 관세율하에서는 국내산업이 다소 관세과잉(Tariff Redundant)상태일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WTO 양허협상 수용, APEC 및 ITA(정보기술협정) 무세화 협상의 진전과 함께 New Round가 본격 추진될 경우 2000년대초에는 대부분의 품목이 8% 이하의 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므로 8%를 중심으로 한 균등관세율체계가 점진적으로 퇴색(낮은 세율 적용 품목 확대)될 전망임.

표 5. 교역재의 업종별 내외가격차

(단위 : 개, %)

	조사품목수		실질가격차 평균		명목가격차		비가격차	
	1987	1991	1987	1991	1987	1991	1987	1991
섬유	21	29	4.5	6.9	-1.8	3.2	6.3	3.7
제지·목재	9	15	9.3	16.3	-2.9	19.6	12.2	-3.2
고무·가죽·신발	7	5	5.2	9.5	-8.8	2.5	14.0	7.0
요업	9	8	12.1	11.5	-6.0	1.5	18.1	10.0
석유화학	26	37	15.6	21.4	7.2	18.4	8.4	3.0
정밀화학	7	13	21.4	38.1	8.4	29.9	13.0	8.2
철강	19	19	13.3	5.9	4.5	6.3	8.8	-0.4
비철금속	11	15	25.4	13.9	20.2	2.8	5.2	11.1
기계	37	65	14.7	14.4	-12.9	-6.8	27.6	21.2
전기·전자	49	65	12.7	26.5	-9.4	9.0	22.1	17.6
수송용기계	14	15	13.3	16.1	-26.2	-5.0	39.5	21.1
잡제품	14	8	8.8	46.1	-18.5	18.3	27.3	27.9
교역재전체	223	294	13.0	18.8	-5.3	6.4	18.3	12.4

주 : 1) 명목가격차(가격경쟁력) = (국내가격 - 수입가격)/수입가격 × 100

2) 비가격차(비가격경쟁력) = (수입가격 - 수출가격)/수입가격 × 100

3) 실질가격차(종합경쟁력) = 명목가격차 + 비가격차

4)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은 FOB가격 기준임.

자료 : 한국산업은행,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1992

## 2. 식료품(농·축·수산물포함)의 관세 율정책 추이

### 가. 상품 개요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부에서 제4부(제1류~제24류)에는 동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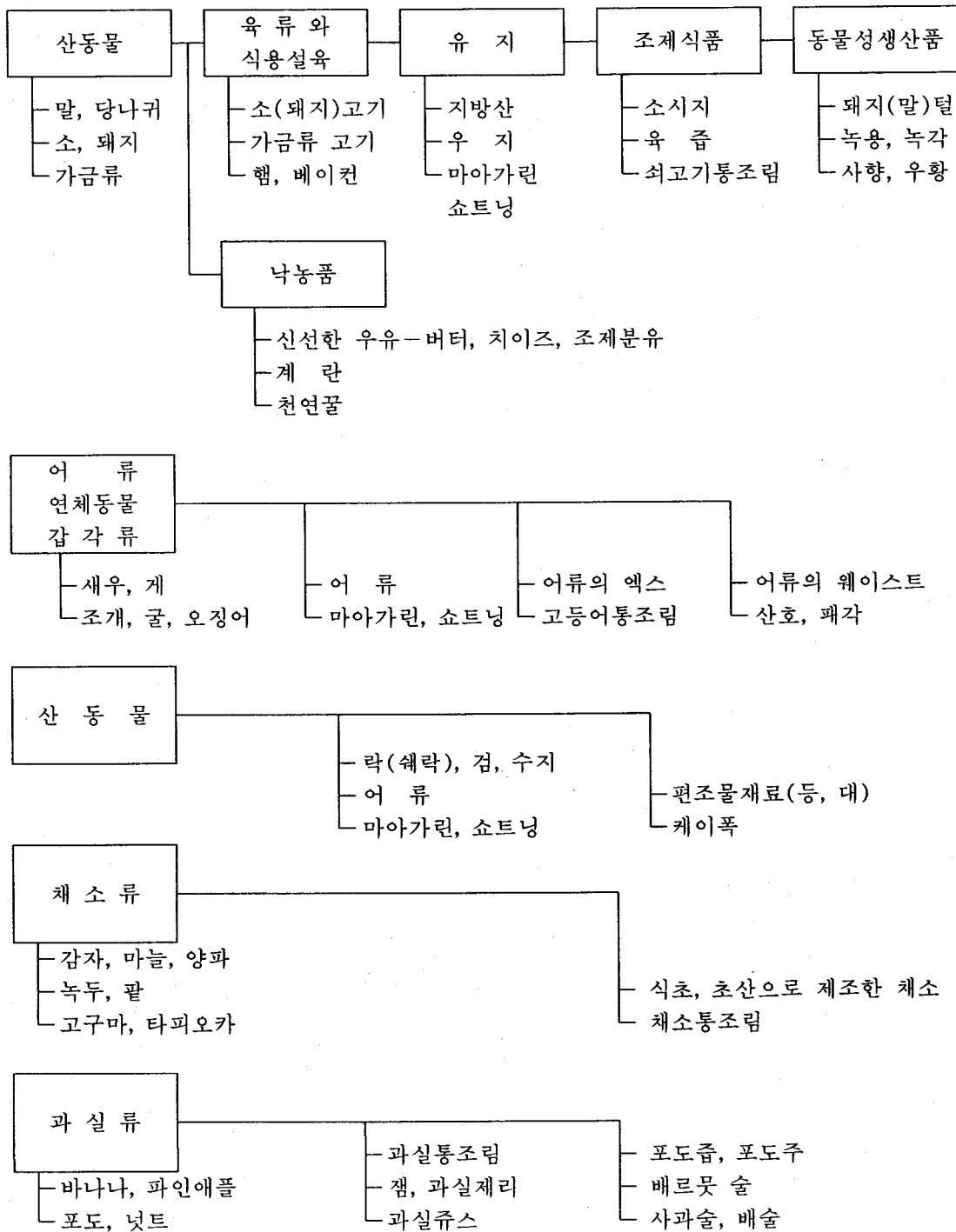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의 유지와 이들의 분해생성물, 조제식료품 등 자연의 동·식물체와 이들과 관련하여 일어질 수 있는 물품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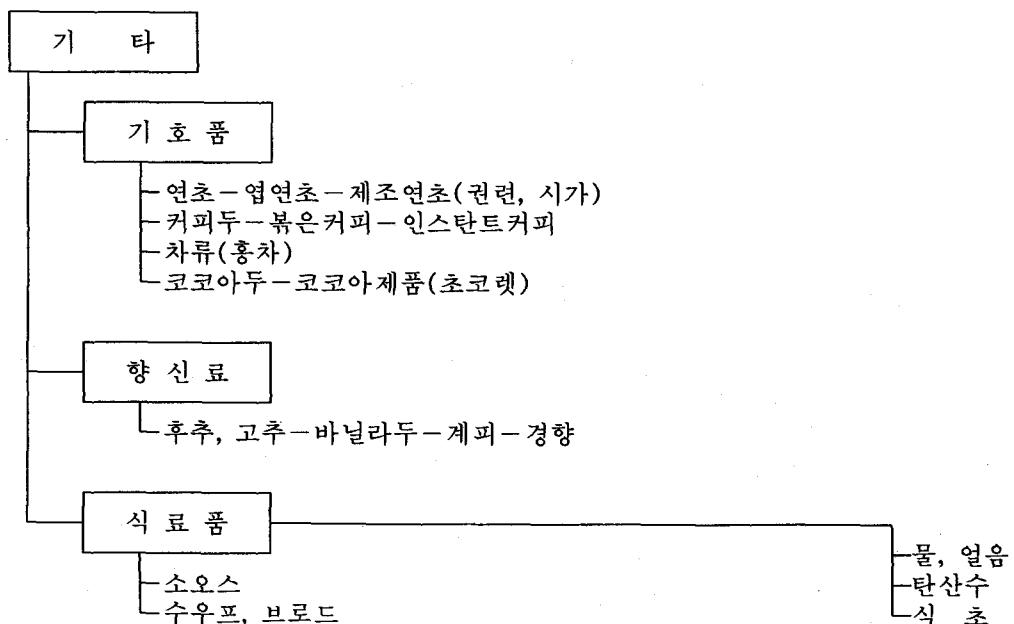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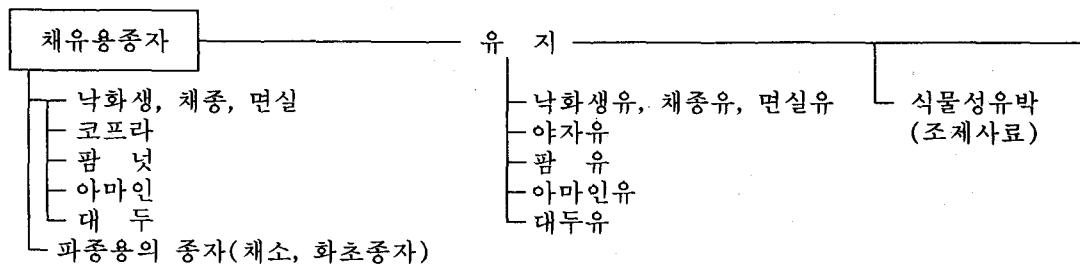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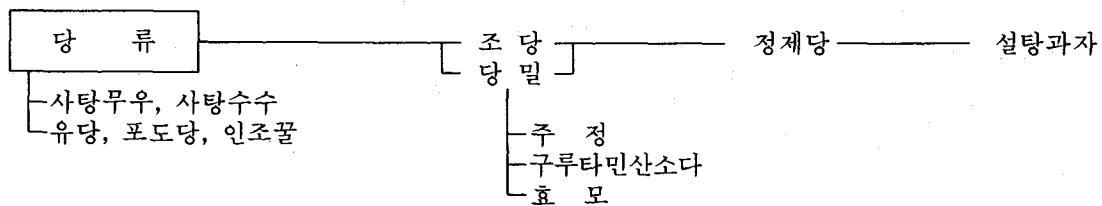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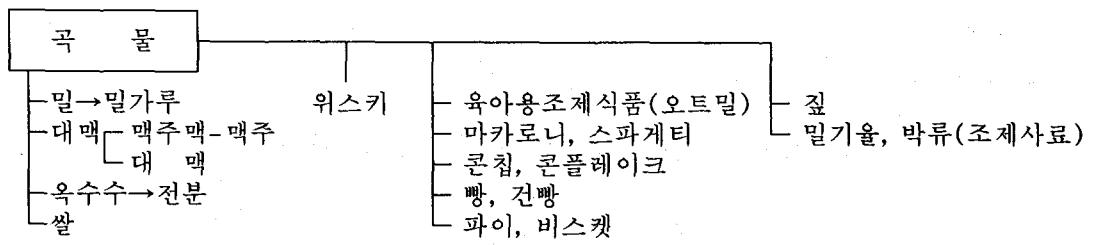
※ 제1부~제4부의 내용

부	1	2	3	4
류	1~5	6014	15	16~24
내용	산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동물성 생산품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 물, 조제식용脂와 동·식물성의 납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코올, 식초 및 연초

○ 상기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상품내역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나. 수출입규모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과 수출

공히 과거에 비해 약간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총수출입에 대한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의 비중>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년 도	수 입			수 출		
	총수입(a)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총수출(c)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계(b)	점유비(b/a)		계(d)	점유비(d/c)
'79	20,338	1,893	9.3	15,055	1,305	3.7
'97	144,616	8,584	5.9	136,164	3,131	2.3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의 수입중 대종 상품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를 보면 식량자급도 저하에 따르는 곡물이 전체중 22%('97년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 패턴의 변화로 육류소비증대에 의한 육류

수입이 전체중 9.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않는 비경쟁상품인 당류 및 코코아 제품이 전체중 7.6%를, 특히, 20년전과 비교시 조제식료품과 기호품의 수입이 현격히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년 도	'79년도(a)	'79 년도 전체중 점유비(a/b)	'97년도(c)	'97 년도 전체중 점유비(c/d)
산동물	29	1.5	36	0.4
육 류	160	8.5	790	9.2
낙농품	6	0.3	141	1.6
어류·갑각류	55	3	860	10
채소류	25	1	167	2
과실류	9	0.5	194	2.3
곡 물	749	40	1,886	22
동·식물유지	320	17	342	4
조제식료품	20	1	665	7.7
기호품	79	4	723	8.4
당류 및 코코아제품	225	12	655	7.6
커피·차·향신료	76	4	241	2.8
기 타	141	7	1,884	22
계	1,892(b)	100	8,584(d)	100

다.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류 관세율정책 추이 개요

년도	전 체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류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기능의 중립화 지향 (20% 균일세율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세율 : 35.7%</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부존자원 개발유도 → 재정관세 (균등재정)</li> <li>○ 물자수급 원활 지원 → 저재정관세 (차등재정)</li> </ul> <p>&lt;분야별 세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 물 류 : 20(잠 10)</li> <li>- 채 소 과 실 : 40~60(잠 30~40)</li> <li>- 유 지 : 30~60(잠 20~40)</li> <li>- 축 산 물 : 40~60(잠 40)</li> <li>- 조제식료품 : 80(잠 60)</li> <li>- 기 호 품 : 150(잠 80)</li> </ul>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riff Escal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관세율 24.9%</li> <li>- 잠정세율의 기본세율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자수급 원활화와 비축지원 → 재정관세부과</li> <li>○ 국내산업의 보호와 지원 → 특별법에 의존</li> </ul> <p>&lt;분야별 세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 물 류 : 5~20</li> <li>- 채 소 류 : 30</li> <li>- 과 실 류 : 40</li> <li>- 유 지 : 20</li> <li>- 축 산 물 : 25</li> <li>- 조제식료품 : 80</li> <li>- 기 호 품 : 150</li> </ul>

년도	전 체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류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riff Escal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관세율 23.7%</li> <li>- 고세율의 일률인하방식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료품류 등 고세율품목의 관세율 인하           <p>&lt;분야별 세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 물 류: 5~20</li> <li>- 채 소 류: 30</li> <li>- 과 실 류: 40</li> <li>- 유 지: 20</li> <li>- 축 산 물: 25</li> <li>- 조제식료품: 60</li> <li>- 기 호 품: 150</li> </ul> </li> </ul>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form Rate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관세율 22.5%</li> <li>- 30-30-25-25-20%의 5개년 예시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조제식료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산품과 차등을 두지 않고 세율 인하</li> <li>○ 농산물 및 조제식료품산업과 타공산품 산업과의 균형발전 도모</li> </ul> <p>&lt;분야별 세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 물 류: 5~10</li> <li>- 채 소 류: 30</li> <li>- 과 실 류: 50</li> <li>- 유 지: 15</li> <li>- 축 산 물: 20~40</li> <li>- 조제식료품: 40~50</li> <li>- 기 호 품: 100</li> </ul>

년도	전 체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류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form Rate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중심세율로 수렴</li> <li>- 15-13-11-9-8%의 5개년 예시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조제식료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공산품과 차등을 두지 않고 세율인하</li> <li>○ 농산물 및 조제식료품산업과 타공산품 산업과의 균형발전 도모</li> </ul> <p>&lt;분야별 세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 물 류: 5~10</li> <li>- 채 소 류: 30~50</li> <li>- 과 실 류: 50(바나나 100)</li> <li>- 유 치: 10~40</li> <li>- 축 산 물: 20~50</li> <li>- 조제식료품: 20~50</li> <li>- 기 호 품: 100</li> </ul>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세 조정 때문에 5개년 예시제 1년 순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9~93년까지를 1989~94년까지로 변경</li> </ul>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form Rate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류등 257개 품목의 관세율 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협상 타결의 결과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에 따라 가공식품의 기초원재료가 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각종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li> <li>-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로 부과</li> </ul> <p>&lt;분야별 세율&gt;</p> <table> <tbody> <tr> <td>- 곡 물 류: 3~5</td> <td>(117.2~862.5)</td> </tr> <tr> <td>- 채 소 류: 30~50</td> <td>(145.5~956.4)</td> </tr> <tr> <td>- 과 실 류: 50</td> <td>(84.3 ~ 659)</td> </tr> <tr> <td>- 유 치: 10~40</td> <td>-</td> </tr> <tr> <td>- 축 산 물: 20~50</td> <td>(30.5~261.9)</td> </tr> <tr> <td>- 조제식료품: 20~50</td> <td>(58.2~813)</td> </tr> <tr> <td>- 기 호 품: 100</td> <td>-</td> </tr> </tbody> </table> <p>&lt;양허세율&gt;</p> <table> <tbody> <tr> <td>- 곡 물 류: 3~5</td> <td>(117.2~862.5)</td> </tr> <tr> <td>- 채 소 류: 30~50</td> <td>(145.5~956.4)</td> </tr> <tr> <td>- 과 실 류: 50</td> <td>(84.3 ~ 659)</td> </tr> <tr> <td>- 유 치: 10~40</td> <td>-</td> </tr> <tr> <td>- 축 산 물: 20~50</td> <td>(30.5~261.9)</td> </tr> <tr> <td>- 조제식료품: 20~50</td> <td>(58.2~813)</td> </tr> <tr> <td>- 기 호 품: 100</td> <td>-</td> </tr> </tbody> </table>	- 곡 물 류: 3~5	(117.2~862.5)	- 채 소 류: 30~50	(145.5~956.4)	- 과 실 류: 50	(84.3 ~ 659)	- 유 치: 10~40	-	- 축 산 물: 20~50	(30.5~261.9)	- 조제식료품: 20~50	(58.2~813)	- 기 호 품: 100	-	- 곡 물 류: 3~5	(117.2~862.5)	- 채 소 류: 30~50	(145.5~956.4)	- 과 실 류: 50	(84.3 ~ 659)	- 유 치: 10~40	-	- 축 산 물: 20~50	(30.5~261.9)	- 조제식료품: 20~50	(58.2~813)	- 기 호 품: 100	-
- 곡 물 류: 3~5	(117.2~862.5)																													
- 채 소 류: 30~50	(145.5~956.4)																													
- 과 실 류: 50	(84.3 ~ 659)																													
- 유 치: 10~40	-																													
- 축 산 물: 20~50	(30.5~261.9)																													
- 조제식료품: 20~50	(58.2~813)																													
- 기 호 품: 100	-																													
- 곡 물 류: 3~5	(117.2~862.5)																													
- 채 소 류: 30~50	(145.5~956.4)																													
- 과 실 류: 50	(84.3 ~ 659)																													
- 유 치: 10~40	-																													
- 축 산 물: 20~50	(30.5~261.9)																													
- 조제식료품: 20~50	(58.2~813)																													
- 기 호 품: 100	-																													

### 유제품산업

구 분	물 품	세 율(%)				
		'80	'88	'95	'98	최 종 양허세율
원 료	유 장	25	20	20	20	36
	유장분말	25	20	20	20	36
	유채유	40	40	30	30	36
	해바라기씨유	30	40	25	25	18
	카세인	40	20	20	20	22.5
완 제 품	커피크림	60	30	8	8	54
	마요네즈	60	30	8	8	54
	마아가린	60	20	8	8	19.7
	아이스크림	60	30	8	8	22.9~54

### 제과업

구 분	물 품	세 율(%)				
		'80	'88	'95	'98	최 종 양허세율
원 료	코코아	60	10~20	3~8	2~8	13.1~19.7
	코코아분말	60	20	8	5	19.7
	츄잉껌베이스	30	10	3	3	13.1
	설탕	40	20	5~8	3~50	18~85.1
	밀가루	30	20	5	5	1.8~9
완 제 품	캔 디	60	20	8	8	19.7
	스낵과자	60	20	8	8	19.7~27
	비스켓	60	20	8	8	19.7
	츄잉껌	60	20	8	8	19.7
	쵸콜렛	80	20	8	8	26.2

제과업

구 분	물 품	세 율 (%)				
		'80	'88	'95	'98	최 종 양허세율
원 료	커피나무	20	20	8	8	13.1
	코코아나무	20	20	8	8	13.1
	인 삼	20	20	20	20	—
중간제품	커피원두	30~60	10~40	3~8	2~8	29.5~54
	코코아두	60	10~20	3~8	2~8	13.1~19.7
	홍 혜	60	40	40	40	60.7
	인삼분	20	20	20	20	18
	코코아분	60	20	8	5	—
완 제 품	홍 차	60	40	40	40	60.7
	인삼사	60	30	8	8	22.9
	인스탄트홍차	80	40	40	40	40
	인스탄트커피	80	40	8	8	54
	코코아차	60	20	8	8	27

채소·과실식품제조업

구 분	물 품	세 율(%)				
		'80	'88	'95	'98	최 종 양허세율
원 료	감자	30	30	30	30	-
	마늘	30	30~50	30~50	30~50	-
	팥	30	30	30	30	-
	고구마	40	20	20	20	45
	바나나	90원/Kg	100	30	30	90
	오렌지	60	50	50	50	-
	사과	40	50	50	50	45
중간제품	전분	40	20	8	8	-
	음료의베이스	60	20	8	8	36~45
	과실주우스	60	50	50	50	30~54
완제품	아스파라가스 통조림	60	50	50	50	45
	파인애플 통조림	60	50	50	50	45

토마토케찹

구 분	물 품	세 율(%)				
		'80	'88	'95	'98	최 종 양허세율
원 료	토마토	30	50	50	50	45
중간제품	토마토페이스트	60	20~50	8~50	8~50	31.5~45
완제품	토마토케찹	60	30	8	8	54

주류제조업

구 분	물 품	세 율 (%)				
		'80	'88	'95	'98	최 종 양허세율
원 료	백 미	5	5	5	5	—
	소 맥	5	5	5	5	1.8~9
	보 리	5	5	5	5	—
	맥주액	40	50	30	30	—
	고구마	40	20	20	20	45
	당 밀	60	10	3	3	9~16.4
	사과	40	50	50	50	45
	포도	40~60	50	30~50	30~50	21~45
	복숭아	40	50	50	50	45
중간제품	맥 아	50	50	30	30	27
	주 정	40~100	50~100	30	10~30	8~90
완 제 품	탁 주	150	100	30	30	30
	청 주	150	100	30	30	30
	맥 주	150	100	30	30	30
	브랜디	150	100	30	30	30
	위스키	150	100	30	30	30

### 3. 현행 기본관세율 및 식료품관세율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 가. 기본관세율구조의 특징

- '97년도에 2차 관세율예시제('89 ~'94)가 완료됨에 따라 평균관세율이 18.1%→7.9%수준으로 인하
- '94년 이후 균등관세율구조에 큰 변화 없이 '97년에 일부품목의 관세율 보완조치
  - 의류·신발의 인상(69개), 기초원자재·중간재의 인하(152개)
- 우리나라의 관세율수준은 선진국보다는 약간 높고 대만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금년들어 실효관세율은 약4.29%→3.08%대로 낮아지고 있음.
  - 평균관세율('97) : 7.9%(일본 : 9%, 미국 : 6.4%, EU : 5.6%, 호주 : 6.1%, 대만 : 8.6%, '96 기준임)
  - 실효관세율('97) : 4.29%(일본 : 4.0%, 미국 : 3.4%, 호주 : 5.0%, 대만 : 5.4%, '96 기준임)
- 현재 균등관세율에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차등관세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중간재·완제품간 세율격차가 0.1%(미국, EU는 0.8%)
- UR무세화협정, ITA협정 등에 의하여 연도별로 양허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율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음.
  - UR무세화, 관세조화참여품목은 총 3,321개 품목임(전체 HSK의

30%).

- '98 현재 양허세율적용품목은 954개임(전체 HSK의 8.7%).

#### 나. 농산물 및 식료품 관세율 구조의 문제점

##### ○ 관세율 현황

- 참깨 등 기초농산물 206개 품목에 대하여는 최고 1,138% 고관세율 부과
- 기초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은 8~50%의 저관세율 부과

##### ○ 문제점

###### <관세율 측면>

- 위장수입방지를 위하여 매건 분석확인 등, 관리절차 복잡
- 품목분류 기준 제정·시행결과 외국통상마찰 야기(예 : 조제품)
- 고질적인 밀수유발 요인으로 작용(예 : 참깨)

###### <국내산업보호 측면>

- 국내식품가공업체가 위축되어 외국제품 치수입으로 방향전환
- 원료와 제품간의 역관세 현상
  - 유제품, 견과류 등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관세율이 제품의 관세율보다 높아 소위 역관세 현상이 발생
  - 이는 국내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완제품인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의 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

원    료	기본세율 (%)	완    제    품	기본세율 (%)
유장, 유장분말	20	아이스크림	8
유채유	30	마야가린	8
해바라기씨유	25	마요네즈	
카세인	20	커피크림	8

- 외국에 비하여 낮은 관세율 유지
  -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관세율 수준은 미국, 일본, EU 등 주

요 경쟁국의 관세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서 국내 시장의 잠식요인이 되고 있음.

	한 국	미 국	일 본	E U	대 만
아 이 스 크 림	8	18/20	24~32	22	22.5
비 스 커 퍼	8	0	24	11+EA	15~35
커 쿠 렛	8	0	16	11.3	5, 10
마 아 가 린	8	0~12	10, 23.2	10.2+EA	15
토 마 토 케 찹	8	13.3￠/kg	32.4	20.5	12.5
		0~33.3	0~33.3	0~29.9	10~40

#### <농민보호 측면>

- 원래 의도한 고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농민보호효과 의문

#### 4. '98 관세율개편 여건과 방향

##### 가. '98 관세율개편 여건

- 본격적인 저관세율 체계하에서의 국제무역 전개
  - WTO양허 의무이행, APEC 및 ITA무세화 협상 진행, New Round의 본격추진 등을 통한 2000년 대초 저관세율체계의 조기 정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진행
  - 관세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제고

- 세계경제의 국제화와 협력 증대
  -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를 위한 국제관세협력 강화
- 금년은 IMF 등 경제위기로 인해 관세 등의 세수차질이 예상되므로 관세율 구조개편에 한계가 있음.
  - '98 관세청 총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 21조5,624억원에 비하여 약 3조1천억원 부족징수(약 △14%) 예상
  - 관세부분만의 징수전망액은 당초 목표 6조8,024억원에 비하여 2조2천억원 부족징수(약 △32%) 예상

(단위 : 억원)

구 분	'98목표 (A)	실적 및 전망			목표대비 B/A(%)
		실 적 ('98. 상반기)	전 망 ('98. 하반기)	합 계(B)	
관 세	68,024	21,769	24,725	46,494	68
내 국 세	147,600	65,090	72,932	138,022	94
합 계	215,624	86,859	97,657	184,516	86

##### 나. 가공식료품류 관세율 개편 기본 방향

- 가공식료품의 세율을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인상하여 국내 식품가공 업계를 지원
  - 국내식료품가공업계는 가공원료

의 세율이 높아 원가면에서의 부담과 완제품의 세율이 낮아 외국제품과 경쟁해야하는 이중 부담이 있음.

- 자급도가 낮은 기초농산물의 세율

- 을 인하하여 국내식료품 가공업계를 지원하고 통관절차의 간소화
- 참깨 등 자급도가 낮은 기초농산물은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대부분이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어 농민보호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공업계의 생산원가에 큰 부담을 주며, 세관의 통관 관리절차가 복잡해지며, 고질적인 밀수 유발요인으로 작용

#### 다. 분야별 관세율조정 방향

##### 식료품분야

###### 세율인상(완제품)

###### <대상품목>

- 가공식품 원료와 제품간의 역관세 현상을 보이는 물품

###### <세율>

- 주수입국인 미국·EU와의 통상마찰 가능성, 국내물가상승요인, 외국관세율수준등을 감안하여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

###### 세율인하(원료)

##### <대상품목>

-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및 해당관세 적용실적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인하

##### <세율>

- 유사물품 세율 및 현행 할당세율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인하

###### 세율인상(완제품)

##### <대상품목>

-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수입 되고 있는 물품
- 저가 농산물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가 적용중인 물품 및 이들 물품과 연관된 물품

##### <세율>

-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현행 조정관세율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 세율인하

##### <대상품목>

- 국내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 수입되는 일부물품

###### 세율

- 유사물품 세율을 감안하여 조정